

사 건 위 임 계 약 서

위임인 _____ (이하, '갑')은, 수임인 법무법인 위너스 및 법무법인 한서(이하, '을')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1. 사건의 표시

가. 사건명 : 손해배상 청구 소송

나. 상대방 : _____

2. 위임범위 : 위 사건의 확정시까지의 일체 업무. (당해 심급에 한하지 않고, 상소의 제기, 강제집행, 강제집행 정지, 보전처분, 사건 확정 이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포함)

3. 수권범위 : 본 계약과 별도로 작성, 교부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권범위로 함.

4. 자료제공 :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.

5. 선 임 료

가. 착수금 : 없는 것으로 함.

나. 성공보수금 : 을이 본 약정에 따라 수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(원금 및 이자 포함)의 33% (부가가치세 별도).

다. 위 나.항의 성공보수금은 판결,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(화해권고결정 포함), 조정(조정에 갈음하는 결정), 상대방의 인락 내지 상소취하를 불문하며, 을이 상당한 노력을 투여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 내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함. 만약 소의 취하로 인하여 성공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이 소요한 비용 일체(감정료, 인지 송달료 등)와 위약벌 금 1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함.

라. 갑은 을이 위 나.항의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,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고 인감도장 날인 등을 협조함.

6. 비용부담

가.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, 감정료 등 소송비용 일체는 을이 선투입함. 단, 을이 선투입한 금원은 갑이 받을 경제적 이익에서 우선 공제함.

나. 사건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얻은 소송비용의 이익은 갑에게 지급함.

7. 계약해지 : 갑이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,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음.

8. 자료보관 :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음.

9. 인장조각 :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,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10.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함.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4

위임인(갑) 성 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 :

연락처 :

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:

수임인 (을)

법무법인 위너스

대표변호사 오 철 석

담당변호사 이 마 리

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

15, 405호(서초동,길도빌딩)

차량번호 :

법무법인 한서

대표변호사 오 진 옥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, 7층

(서초동, 케이원빌딩)

※ 주민등록증 사본 (앞, 뒷면) 첨부

